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2022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전 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과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이라 함)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위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2022년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차기 교섭·협의 시까지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세종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장 교권보호

제1조 【교권침해 피해 교원 적극 보호】

- ① 교육청은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 분리 등 피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교권침해로 결정된 경우 해당 교원의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제2조 【민사·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확대】

교육청은 소속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나 고소·고발 등의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의 보호 강화】

- ① 교육청은 각종 제보 등 교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② 교육청은 전화 연결음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인의 전화폭언 예방을 위한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제2장 교원의 근무여건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제1조 【승진 및 전보 가산점 제도 개선 절차 마련】

교육청은 승진 및 전보 가산점 제도 개선 논의 시 공청회 등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추진 시 유예기간 등 관련 교사들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2조 【장기 별거부부 교원 고충 해소】

교육청은 장기 별거 교원에 대한 고충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3조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 ①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담당교사가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②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이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여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차등 성과급 폐지 및 수당으로의 전환 지급】

교육청은 차등 성과급을 폐지하고 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한다.

제5조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6조 【교감 근무여건 개선】

- ① 교육청은 교감의 업무고충 실태를 파악하고 유형별 교감업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② 교육청은 교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신설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교감의 직급보조비를 현실에 맞게 관계기관 의견수렴 시 건의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각종 교원수당 인상】

교육청은 교원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교원수당 인상과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청과 의견을 검토하고, 수십년간 동결된 교장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3,000원씩 가산)를 현실성 있게 인상하도록 관계기관 의견 수렴 시 건의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보건·영양·사서교사의 직무연수 과정 개발 및 확대】

교육청은 보건·영양·사서교사의 연수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 【업무중심의 표창 개선】

교육청은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포상이 업무중심이 아닌 학생의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교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포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0조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개선】

교육청은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직

인사 및 채용, 복무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3장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보장

제1조 【학교 내 교육공무직 파업 시 대비책 마련】

교육청은 학교 내 파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고충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2조 【학교 업무 갈등 시 지원 방안 마련】

교육청은 학교 내에 교원과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원 간 업무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제3조 【교원의 업무 경감】

교육청은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검토·시행한다.

- ① 교육청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TF팀 구성 시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공문서 이외의 방법(업무메일)으로 보고 요구 및 업무 협조 요청을 지양한다.
- ③ 교육청은 각종 감사 시 기존 자료를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학교 예산의 적기집행을 추진하고, 재정집행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지원한다.
- ⑤ 교육청은 국회, 시의회의 각종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나이스·교무업무·에듀파인 등에 있는 자료는 맞춤형 통계분석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자료 요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단위학교에서 자료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⑥ 교육청은 학교체육활성화와 업무 담당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보직교사 증치 기준에 해당 분야가 포함 되도록 노력한다.
- ⑦ 교육청은 교원과 교육행정직의 복무에 대해 법률적 근거에 의거한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공무직은 협약에 따라 복무 기준을 제시한다.

제4장 교원단체 활동 보장 및 지원 확대

제1조 【교원단체 교육 행사 지원】

- ① 교육청은 세종교총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교육청은 세종교총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③ 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종교총 해당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1. 교육청과의 교섭·협의회 교섭위원 참석
 - 2. 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 참석
 - 3. 한국교총(세종교총) 대의원회(연1회)
- ④ 교육청은 교원단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신규교원 집합연수 시 세종교총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합의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책협의회 운영】

교육청과 세종교총은 교섭·협의 이행과 교육 현안 협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정책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다.
- ② 정책협의회 안건은 상호 2주일 전에 통보한다.

제3조 【이행노력 및 이행방법】

교육청은 세종교총과의 교섭·협의 합의 이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 ① 교육청은 교섭·협의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이 합의서의 내용을 직속기관장, 학교장에게 배포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안내한다.
- ③ 교육청과 세종교총은 이 합의서 내용 중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관련된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세종교총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이행될 수 있도록 재안내한다.

제4조 【보충합의】

교육청은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 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련된 조례와 규칙 및 훈령의 제정·개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의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쌍방의 합의로 보충합의를 할 수 있다.

제5조 【합의서 보관】

본 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교육청과 세종교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2.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남윤제

남윤제